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험성 평가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으로 확대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58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험성 평가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으로 확대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7일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험성 평가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으로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위험성 평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참여 보장과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77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한다)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업무 배정 시스템 등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포함한다)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u>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u> <u>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u> <u>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u> <u>③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 등 전통적 개념의 사업장과 근로행태에 내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보장과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 사항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기술의 발달과 노동 환경의 변화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해진 행태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사업장 없이 불

특정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수시로 변화하는 등 새로운 노무제공 행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재해도 증가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 의무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등에게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 법령 등에는 전통적 개념의 사업장과 노무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위험성 평가의 방법과 분석 기법¹⁾이 규정되어 있고 위험성 수준의 결정이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방법이나 분석 기법 등을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마련하는 것이 선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사. 결함 수 분석(FTA)
 - 아. 사건 수 분석(ETA)
 - 자. 원인결과 분석(CCA)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행되어야 하는 등 개정안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서 현실적인 위험성평가 대상 범위, 종사자 참여 방법·절차 등을 정형화하여 규정하기가 어려워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위험성평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필수절차 누락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도입될 경우, 의무 이행 여부 판단 등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 우려되므로 직종별 업무 특성, 유해·위험요인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